

# 운항실습비 운영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03.01		16		
2	2017.11.2		17		
3	2018. 3. 1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운항실습비 운영에 관한 규정

- 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운항실습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울진비행훈련원에 입과한 학생 및 2018학년도 이후 항공운항학과로 소속된 학생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03.01., 2017.11.2., 2018.3.1>
- 제2조** (책정) 운항실습비는 교육과정에 따라 총장이 책정한다.  
<개정 2017.03.01., 2017.11.2.>
- ② <삭제 2017.03.01>
- ③ <삭제 2017.03.01.>
- 제3조** (부과·징수) ① 제2조에 따라 책정된 운항실습비는 수업연한 4년(8학기)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7.03.01., 2017.11.2., 2018.3.1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항학과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할 경우 잔여 학기 운항실습비를 일괄 징수한다. 다만, 중도에 비행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7.03.01., 2017.11.2>
- ③ 운항실습비 징수기일은 「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르면 교내 홈페이지(종합정보시스템)로 고지한다. <신설 2017.03.01.>
- ④ 전과, 재입학, 자유전공학부의 전공배정 등의 경우에는 항공운항학과 소속 학생으로 승인된 시점부터 해당학기의 운항실습비를 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7.11.2>
- ⑤ 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비행교육원에 입과 시 미 납부된 운항실습비를 입과 시점의 운항실습비 기준으로 잔여학기에 분할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7.11.2>
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순수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운항실습비를 부과·징수하지 아니한다. 단, 비행교육원 입과 시 제5항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7.11.2>
- 제4조** (징수고지) <삭제 2017.03.01>
- 제5조** (운항실습비의 대체) 운항실습비를 납부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 운항실습비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>
1. 수업일수 4주선 이내에 일반 휴학(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포함)한 경우  
<개정 2018.3.1>
2.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(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업일수 2/3선 이내에 휴학)한 경우  
<개정 2018.3.1>
- 제6조** (운항실습비의 반환) ① 운항실습비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에는 운항실습비를 반환한다.
1. 운항실습비가 과오납된 경우
2.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수업일수 4주선 이전 본인이 반환을 원할 경우 (단, 부모님 동의 필요) <개정 2018.3.1>

3. 수업일수 4주선을 지나 일반 휴학(육아휴직 및 창업휴학 포함)할 경우

<개정 2018.3.1>

② 학기재수로 인하여 운항실습비가 중복 징수된 경우, 이전 학기에 기 납부한 운항실습비를 반환한다.

③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<별표2>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단, 별도의 환불기준이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11.2>

[전조개정 2017.3.1]

**제7조** (반환절차) ① 제6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관련 서류를 항공운항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2>

② 항공운항학과에서는 반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재무팀에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③ 운항실습비 반환신청기한은 졸업 이전으로 한다. <개정 2017.11.2>

[전조개정 2017.3.1.]

**제8조** <삭제 2017.03.01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학년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  
(경과조치) 단, 제3조제4항제5항제6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 <삭제 2018.3.1>

<별표 2> <개정 2017.03.01., 2017.11.2., 2018.3.1>

### 운항실습비의 반환기준

1. 일반적인 경우

구분	반환금액
비행교육 입과 전	전액 반환
비행교육 입과 후	○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 : 전액 반환
	○ 비행을 한 경우 : 반환일까지 납부한 운항실습비×(잔여비행시간/총 비행예정시간)

2.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(비행교육 입과 후)

구분	반환금액
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	반환일까지 납부한 운항실습비×(5/6)
비행을 한 경우	반환일까지 납부한 운항실습비×(잔여비행시간/총비행예정시간)×70% ※단, 총비행시간의 80%이상 비행 시 반환되지 않음